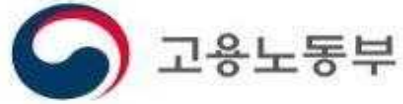


보도참고자료



배포일시: 2019. 4. 9.(화)

총 3쪽

담당부서

❖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
담당관 이민재 (044-202-7026)
사무관 허기훈 (044-202-7028)

❖ 강릉고용노동지청
지원팀장(지청장) 정병팔 (033-650-2591)
상황반장(사무관) 김선희 (033-650-2538)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특별재난지역, 고용·생활안정 및 산업안전 즉각 지원

- ▲ 사전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한 수급자도 사후 실업인정 허용
- ▲ 고용·산재보험료, 장애인부담금 납부기한 연장, 체납처분 유예

□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원 산불 피해 5개 시·군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(4.6)됨에 따라 본부-현장이 함께 지원대책팀을 구성*하여 운영할 것을 지시하였다.

* (총괄) 기획조정실장, (구성) 강릉고용노동지청장<대책팀장>, 상황반, 고용지원반, 재해지원반



- 이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,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지원이 실시된다.

□ 첫째,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,

-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 실업 인정일 변경을 적극 안내하고,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한다.
- 아울러, 고용·산재보험료, 장애인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.

- 둘째,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,
 - 특별재난지역 근로자에 대한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
 -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여 산불 피해주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.
- 셋째, 산불 피해 사업장 재가동 시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지원 신청을 받아 기술지도를 실시하고,
 - 피해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,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.
- 이재갑 장관은 4월 8일 열린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“대형 산불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강원 동해안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<붙임> 특별재난지역 고용안정 및 산업안전 주요 지원내용

 공공누리	 공평지적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허기훈 사무관(☎044-202-702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	---

분야	대상사업	지원내용
고용 안정	실업급여 (실업인정 완화) 강릉고용센터 033-610-1916 속초고용센터 033-630-190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별재난지역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,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지원 (개별유선 연락 등) ·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,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사후 실업인정 허용
	고용보험 (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)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·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,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조치 * 신청방법, 연장 및 유예기간 등은 별도 지침 시달
	산재보험 (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)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,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조치 · 산불로 조업(부분)중단이 있는 경우, 산재보험료 30% 경감
	장애인부담금 (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)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033-737-665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 사업체에 대해 납부·체납처분 유예
	직업능력 훈련 (출결요건 완화) 강릉고용센터 033-610-196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별재난지역 내 실업자·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경우, 출석요건을 완화
	고용유지지원금 (요건 완화) 강릉고용센터 033-610-1913 속초고용센터 033-630-190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주가 휴업, 휴직 등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인건비의 1/2~2/3 지원 (1인당 1일 최대 6.6만원) · 산불피해로 조업(부분)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'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'으로 인정

생활 안정	재직자 생활안정자금 (우대 지원)	· 특별재난지역 근로자는 용자 금리 한시 인하 추진 (2.5% → 1.5%)
	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(우선 선정)	·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직업훈련 생계비 신청자 우선선발
산업 안전	안전조치 지원 및 기술지도	· 특별재난지역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지원 요청 시 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기술지도 실시
	클린사업장 지원사업 (우선 지원)	· 유해·위험요인 개선자금 신청 시 우선지원